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421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7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맞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(이사의 수,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)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9조제1항, 제14조제2~7항).
- 공사 사장의 연임뿐만 아니라 해임 기준도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함(안 제8조제1항).

- 손익금 처리에 관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 조항을 따르도록 함(안 제22조).
-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(안 제25조, 현행 제26조 및 제31조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사항에 맞춰 사장의 연임기준과 해임 기준을 마련하고, 정관으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(이하 “공사”)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임원의 임면 규정(안 제8조)

-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)은 임원의 임면,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, 임원의 수와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(제58조, 제59조).
- 법에 위임을 받은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서는 임원의 임명과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법령에서는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하거나 연임할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(법 제58조제4항 및 시행령 제56조의2)¹⁾, 조례에서는 법령과 달리 연임기준만 법을 준용토록 하고 해임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.
- 이번 개정안은 사장의 연임과 해임기준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등, 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체계상 문제는 없음.
- 다만, 관계 법령이 마련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비하지 못해 조례의 해석과 효력을 둘러싼 혼선을 초래한 점은 집행기관의 적절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움.

다. 이사 및 이사회 규정(안 제9조, 제14조)

- 법 제58조제1항에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)와 감사로 하고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현행 조례에서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/2미만으로 하도록 하고, 비상임이사는 3급 이상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2명과 세무·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(제9조제1항).

1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신설 2006.10. 4>

1.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
3.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

- 공사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수를 보다 구체화해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개정안과 공사 정관의 비교>

원안	개정안	공사 정관
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	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	제10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.

- 최근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이사의 수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²⁾
-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의견을 반영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비상임이사의 수와 자격요건, 상임이사의 정수 범위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- 그러나, 법에서 정관으로 직접 위임한 이사·감사의 수 이외에 시장이

2)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정 추진(법무담당관-10897호, 2018. 7.30).

임면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공사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에서 배제될 수 있고, 시장의 임면 권한까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- 또한,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는 이사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(제62조), 현행 조례 제14조 중 이사회 구성, 의장 선임,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, 비상임이사에 대한 경비 지급 등의 규정은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들 조항을 삭제하고 있음.

마. 손익금의 처리(안 제22조)

- 법 제67조에서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▶이월 결손금 보전 ▶이익준비금 적립 ▶감채적립금 적립 ▶이익 배당 등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감채적립금으로의 적립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규정대로 손익금의 처리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<손익금의 처리 절차 비교>

법	현행 조례	개정 조례안
<p>제67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.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<p><u>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.</p>	<p>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 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립 <p>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	<p>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때에는 <u>법 제67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</u></p>

-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손익금을 처리하도록 하여 추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법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음.

바. 시장의 관리·감독 등(안 제25조, 제26조, 제31조)

- 안 제2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, 이를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사항(2015.12.15.)에 맞춰 단체장의 감독 권한을 정비한 것임.

- 안 제26조는 시장의 권한이던 “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사 및 보고 명령권”을 삭제한 바, 이는 안 제25조에서 시장의 포괄적 관리·감독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중첩되는 규정을 정비한 것임.
- 또한, 안 제31조는 단체장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삭제한 바,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
담당조사관	연락처
이 시 우	02) 2180-8056

<참고자료> 관련 법규

「지방공기업법」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(任免)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
3.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.

1.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

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
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

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
③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 미성년자
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삭제 <2015. 12. 15.>

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제62조(이사회)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7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.

1.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

4.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

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.

제73조(감독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82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

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
제56조의2(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연임기준

가.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
나.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

2. 해임기준

가.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
나.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

다. 삭제 <2009. 9. 21.>

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,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56조의4(임원후보의 추천절차)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,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제7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

제8조(사장) ① 공사의 사장(이하 "사장"이라 한다)은 시장이 임면하되,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,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③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,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.

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따른다. 이 경우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4조(이사회)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.

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
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

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

로 이를 처리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이익준비금의 적립
3. 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
4. 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립

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

1.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
2. 이익준비금으로 보전
3. 결손금으로 차기이월

제25조(감독)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.

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, 조직·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6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27조 (재산의 무상사용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31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5. 10. 8.>

② 과태료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,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